

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491
------	-----

제출일 : 2002. 04. 22.
제출자 : 속초시장

1. 제안이유

- 행정기관의 「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」를 뒷받침하기 위해
 -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(토요일휴무제 도입)
-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 고충 호소
 - 일반직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방법 개선(연가수혜범위 확대)

2. 주요골자
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6조의2제1항)
-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「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」하는 방식에서 당해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「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」(아래산출방식)토록 함(안 제20조제2항)

12(월) - 당해년도 휴직기간(월)

12(월)

× 당해년도 연가일수

-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('01년 6월) 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함(안 제22조)

3. 참고사항

- 강원도 총무 12100 - 1084(2002. 3. 23)

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6조의2(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) ①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,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.

②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제20조제1항중 “결근일수, 휴직일수, 정직일수”를 “결근일수·정직일수”로 하고, “동조제2항 내지 제3항”을 “제3항 내지 제4항”으로 하며,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년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.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,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,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 0.5일이상은 반올림하고, 0.5일미만은 절사한다.

○ 휴직자의 연가일수

$$\frac{12(\text{월}) - \text{당해년도 휴직기간(월)}}{12\text{월}}$$

$$\times \text{당해년도 연가일수}$$

제2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6조의2(토요일전일근무제) ①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. ②토요일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 제20조(연가일수에서의 공제) ①결근일수, 휴직일수,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. 《신 설》	제16조의2(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) ①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,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. ②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 제20조(연가일수에서의 공제) ①결근일수 · 정직일수 ----- ----- -----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년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 일수를 월할 계산한다.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,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,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

현행	개정안
②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·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. ③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. 다만,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. 제22조(공가) 5. <u>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</u>	<u>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 0.5일이 상은 반올림하고, 0.5일미만은 절사한다.</u> ○ <u>휴직자의 연가일수 =</u> $\frac{12\text{월} - \text{당해년도 휴직기간(월)}}{12\text{월}} \times \text{당해년도 연가일수}$ ③(현행 제2항과 같음) ④(현행 제3항과 같음) 제22조(공가) 5. <u>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</u> 〈부칙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